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 5월 21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국 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개정이유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8974호, 2008. 3. 21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따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해오던 옥외광고 관련 증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시 보조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안 제1조)

- 기금 설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함

나. 기금의 재원은 증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안 제2조)

-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증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

다.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라.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안 제5조)

-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마.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안 제9조, 제11조)

-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년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Ⅲ.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첫째, 기금의 재원은 옥외 광고사업 수입금, 증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으로 하고

셋째,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8.3.21 법률 제8974호)의 관련 규정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시사의 지원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 우수광고물 및 모범옥외 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시비를 지원 받아 청기와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홍대정문 앞까지를 2009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지역으로 선정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 1호, 2호, 3호의 각 끝 부분의 **"(당연임명직)"**, **"(위촉직)"**, **"(위촉직)"**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3호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은 동 조항 1호의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안 제11조제3항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의 제8조제2항 규정과 같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자구를 변경하고,

안 제13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법률용어의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이 없이 문구 나열식으로 되어 조문해석에 문제가 있음으로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